

보다 안전한 미래  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
(우)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(수서동,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) / Tel 02-567-1307/ Fax 02-567-1337

[www.assi.or.kr](http://www.assi.or.kr) E-Mail : [assi1337@naver.com](mailto:assi1337@naver.com) 담당 : 박용복국장

문서번호 시험 2020 - 230호

시행일자 2020. 5. 20.

수 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

참 조

선			지	
결			시	
접	일자		결	
	시간		재	
수	번호		공	
처	리	과	람	
담	당	자		

제 목 「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 수정 요청

1. 국가 건설과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귀 청에서 「섬진강 순창지구 외 1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안전점검」을 발주하면서 「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 II. 세부평가방법 2.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“가” 항목에 다음 공고 내용과 같이 유사용역은 최근 5년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, 긴급점검, 정밀안전진단, 정기안전점검, 초기점검 용역사업 중 평가한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용역의 성격이 전혀 다른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(이하 ‘시설물안전법’)에 의해 수행한 실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실적만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공고 내용 -

2. 유사용역 수행실적

가. 유사용역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, 긴급점검, 정밀안전진단, 정기안전점검, 초기점검 용역사업 중 수문, 통문, 제방(호안 포함), 다기능 보에 한하여 건당 준공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용역을 평가한다.

### 3. 수정 요청사항

토목분야의 시공, 설계 및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, ~성능평가 등 건설 기술진흥법상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, 초기점검과 관련이 없는 조항 삭제. 끝.
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
